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27
------------	------

발의연월일 : 2017. 9. 28.

발 의 자 : 박홍근 · 정재호 · 신경민

설 훈 · 이춘석 · 조승래

홍익표 · 어기구 · 김수민

김두관 · 권칠승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1천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별 칙) 제4조제1항을 위반 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u>1천500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별 칙) ----- ----- ----- ----- <u>3천만원</u> ----- -----.